

#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林 采 洪\*\*

1. 머 리 말
2. 비핵지대 개념 및 지역별 현존 레짐
3.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LNWFZ-NEA) 논의 동향 분석
4. LNWFZ-NEA 추진이 갖는 대내외 안보적 함의
5. 맺 음 말

## 1. 머 리 말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에 대한 노력과 함께 핵안보정상회의, NPT 평가회의 및 유엔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등 국제적으로 핵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증폭되고 있다. 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양국 정상은 2009년 12월 5일부로 종료된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I)을 대체할 새로운 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Treaty)을 2010년 4월 8일 체코 프라하에서 서명하였다. 조약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발효 후 7년 이내에 양국은 배치된 핵무기 700기, 핵탄두 1550기, 발사대 800대를 초과 보유하지 못하도록 상호 합의한 것이다. 이는 냉전후 국제안보 상황에 따른 양국의 핵전략 변화와 핵무기 유지비용 절감 등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른 타협의 산물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 온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구현을 위한 일부 성과물이며 핵비확산조약(NPT) 제6조의 핵군축 의무이행을 위한 양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제적 주시 속에 2010년 4월에 개최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47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테러리즘 방지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이어서 5월에 개최된 2010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2006년과 2009년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강력 비판하면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6월 9일 유엔안보리는 이란의 평화적 에너지 확보 목적을 가장한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2006·2007·2008년에 이어 네 번째로 이란 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sup>1)</sup> 이란이 NPT 4조에 근거한 평화적 목적의 에너지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핵활동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여기서 북한도 예외는 아니며 북한이 정권생존과 체제보호 연장 차원에서 시간을 벌기위해 지금까지 6자회담을 이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북핵프로그램 폐기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잠재적 핵위협을 가상하고 핵무기 보유를 통해 국가주권과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일부 국가들의 그릇된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로 타국의 핵사용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안은 바로 핵국이 인정하는 가운데 지역별 비핵지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조약 부속서상 핵국의 소극적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sup>2)</sup>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1) UNSC/Res/1929(2010), Resolution 1929(2010), 9 June 2010.

2) 소극적안전보장(NSA)은 핵보유국이 비핵국에 대해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1978년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5대 핵보유국은 개별적 선언형식으로 NSA를 선언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핵비확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핵군축 달성 차원에서 비핵지대의 효용성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대표적으로 1995년 NPT 연장 및 평가회의에서 '핵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표'를 채택한 가운데 우선적 이슈로 비핵지대의 설치를 장려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비핵지대가 설치되었으며 동일선상에서 몽골이 단일국가 비핵지대를 선언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비핵지대 설치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게 되었다.<sup>3)</sup> 이와 같은 사실은 매년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도 볼 수 있으며 2010년도 결의안으로는 중동지역내 비핵지대 설치를 권유하는 중동 비핵지대 결의안과 아프리카 전 국가들의 서명·비준과 핵국의 조약 부속의정서 서명을 촉구하는 아프리카 비핵지대 결의안 등이 있다.<sup>4)</sup>

국제적으로는 1959년의 남극조약으로부터 2009년 7월에 발효된 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에 이르기까지 현재 7개의 비핵지대 조약이 설립 운용 중에 있으며 중동비핵지대 등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약 120개국 이상이 비핵지대 조약의 당사국이 되어 있고 지구 육지면적의 50%을 차지하며 이는 남반구 전체 육지면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글에서는 먼저 비핵지대 개념과 함께 기존 지역별 비핵지대 레짐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미국 조지아 공대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소(CISTP, 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y, Technology, and Policy)의 존 엔디콧 박사 주도로 추진되어 온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LNWFZ-NEA)의 논의동향과 함께 한국의 현 안보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Documents NPT/CONF. 1995/MC. II/I as contained in NPT/CONF. 1995/32(Part II), p. 330, paras 12-14; NPT/CONF. 1995.CS/CRP. 1/Rev.4; and NPT/CONF. 1995/MC. II/17.

4) UNGA/Res/64/24, Afric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GA/Res/64/26,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14 January 2010.

## 2. 비핵지대 개념 및 지역별 현존 레짐

### (1) 비핵지대의 정의

중남미비핵지대 조약의 서명이 개방된 이후 9년째인 1975년 멕시코 대표가 제시한 초안에 근거하여 완성된 유엔총회결의안<sup>5)</sup>은 '비핵지대는 각국이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하며 조약 혹은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엔총회가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지역내 핵무기의 완전부재 상태 유지와 법령에 의한 의무행을 보장토록 국제적 검증 혹은 통제시스템이 확립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유엔결의안을 분석해 볼 때 다음의 여섯 가지 기본 요소와 한 가지 추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 요소는 첫째, 비핵지대 창설구상은 지역내 위치한 국가들에게만 해당된다. 둘째, 비핵지대는 조약의 지위를 갖어야 한다. 셋째, 비핵지대는 적용지역내 핵무기의 완전부재를 의미한다. 넷째, 비핵지대는 지대내 핵시설에 대한 검증 및 통제시스템을 확립한다. 다섯째, 비핵지대는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여섯째, 비핵지대 적용지역은 명확히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 가지 추가 요소는 비핵지대와 그 회원국들에 대한 핵국의 약속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기 결의안 정의는 비핵지대 창설이 핵국의 참여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조약의 적용지역 내에 자국 관할의 일부 영토를 가진 지대 밖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sup>6)</sup>

5) UNGA/Res/3472(XXX)B, Comprehensive study of the question of nuclear-weapon-free zones in all aspects, 11 December 1975.

6) E. Roman-Morey, "Precursor of Other Nuclear-Weapon-Free Zones," Nuclear-weapon-Free-Zones in the 21st Century, UNIDIR, 1997, pp. 12-13.

## (2) 비핵지대의 목표

비핵지대에 관해 다음 두 가지 공통된 목표가 언급되고 있는데.<sup>7)</sup> 첫째는 즉시적 목표로서 조약의 적용지대 내에서 핵무기의 완전금지를 달성함과 동시에 핵국이 비핵국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함으로써 비핵지대 회원국들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궁극적 목표로서 중남미 조약에서 보편적이고 완전한 군축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지구상 모든 지역을 비핵지대화 함으로써 핵무기에 대한 제로옵션 달성을 반드시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대량과괴 전쟁 위협으로부터 지역 국가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래 회원국 간에 또는 회원국과 핵국 혹은 지역의 국가간에 협력을 필요로 한다.<sup>8)</sup>

## (3) 비핵지대의 특징

비핵지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sup>9)</sup> 첫째, 비핵지대 회원국은 자국내 모든 핵물질과 관련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전면안전조치 하에 두며, 비핵지대별로 다른 통제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으나 IAEA에 의해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과적 감시가 의무사항이다. 둘째, 비핵지대 적용지역은 명확한 지리적 경계를 가지며 조약이 유효한 영토의 전체를 의미한다. 셋째, 비핵지대 관련 국가는 조약 부속의정서상의 의무, 권리 및 책임을 진다. 넷째, 비핵지대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회원국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도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비핵지대 조약은 유효기간이 무기한이다.

7) Ibid., p. 11.

8) J Prawitz, "On the Possible New NWFZ in Asia," p. 436.

9) E. Roman-Morey, Ibid., p. 12.

#### (4) 비핵지대의 안보적 함의

비핵지대는 국제 및 지역적인 안보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sup>10)</sup> 첫째, 비핵지대는 비핵국에 의한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며 이는 핵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둘째, 비핵지대는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핵국들에 의한 핵대결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셋째, 비핵지대는 낮은 수준의 군비로 새로운 군사 및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고, 핵무기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을 제거하므로 지역과 국제적 수준에서 안보와 안정을 증진시킨다. 넷째, 비핵지대는 안보위협요소를 제거 혹은 감소시킴으로써 신뢰구축조치(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sup>11)</sup>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비핵지대는 핵군비통제의 궁극적 목표인 국제적 수준에서의 완전 핵군축으로 향하는 단계의 일부라는 점이다.

#### (5) 비핵지대의 일반적 측면

지구상의 모든 비핵지대 구상은 냉전시대의 정치적 현실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냉전으로 인해 실패한 구상은 북부유럽과 중부유럽 구상이며, 냉전중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설립한 조약은 중남미와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이 있으며, 냉전의 유산으로 설립된 조약은 방콕조약, 펠린다바 조약 및 몽골 선언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1960년대에 태동되어 서서히 추진되어 온 비핵지대는 핵 완

10) M. Elwi Saif, "Nuclear Weapons' Free Zones: A Comparative Political Analysis," p. 475.

11) 신뢰구축조치(CBM)는 국가간 안보협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로서 상호신뢰를 강화시키는 모든 조치를 말하며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서 채택된 '헬싱키 최종합의서(Helsinki Final Act)'의 「CBM과 안보 및 군축의 제 측면에 관한 협약」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주요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군인사 교류, 군 고위급간 Hot Line 개설, 군사활동 정보의 교환, 군사시설 상호 방문 등 다양한 유형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는 군사분야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제고함으로써 상호 오해에 의한 우발적 기습공격의 감행을 저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군축과 같은 인류를 위한 일반적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단기간에 제한된 그러나 실질적인 진전이 핵국 사이의 장기간의 어려운 협상을 통해 얻어진 직접적인 진전보다도 훨씬 효과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비핵지대는 그 자체로서 국제사회에서 군비통제와 군축 프로세스에 대한 점진적 접근방법(step-by-step approach)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2)</sup> 실제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아 비핵지대 설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지대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군축달성을 위한 일시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sup>13)</sup>

1950년대 냉전 분위기하에서는 핵군비통제 분야의 진전이 어려웠으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뒤이은 데탕트 분위기와 함께 1963년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 : Partial Test Ban Treaty)과 1968년의 핵비확산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등이 서명되었다. 그러나 이는 핵무기의 폐기보다는 핵무기 확산을 통제내지는 중지시키기 위한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핵독점 정책이며 1945년 이후 국제사회를 특징지워 온 국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차별정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핵지대는 두 가지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sup>14)</sup> 첫째는 비핵국 관점으로 비핵지대가 지역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인 반면, 둘째는 핵강대국의 관점으로 비핵지대가 핵국의 핵독점 유지를 통한 차별적인 현상유지(discriminatory status quo)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지대는 핵무기 제거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핵국은 국제수역내 핵무기의 존재 혹은 지대내 항구방문의 금지를 강제할지도 모르는 비핵지대 조약안의 조항을 수용하기를 꺼리고 있으므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하려는 조약의 부속의정서에 대한 서명 또는 비준을 거부해 왔다. 5대 핵국이 비핵지대를 다루는데 있어

12) E. Roman-Morey, *Ibid.*, p. 11.

13) J. Prawitz, "On the Possible New NWFZ in Asia," p. 437.

14) M. Elwi Saif, "Nuclear Weapons' Free Zones: A Comparative Political Analysis," p. 470. Forum of the UNESCO International School of Science for Peace, Villa Erba-Cernobbio, Como, Italy, 2-4 July 1998.

스스로 약속한 세 가지 사항이 있다.<sup>15)</sup> 첫째, 비핵지대내 핵국의 통제하에 있는 군사기지 등은 비핵지대 조약의 의무에 구속된다. 둘째, 핵국은 비핵지대내 회원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셋째, 핵국은 지대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핵실험도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이 종종 핵국의 이익과 충돌하여 핵국으로 하여금 조약서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6) 지역별 비핵지대 레짐

지구상에 창설된 비핵지대의 효시는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sup>16)</sup>이며, 핵무기 부재의 남극지대 형성뿐만 아니라 지대 내에서 어떠한 군사적 활동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60년대 초에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1967년 트라텔롤코 조약<sup>17)</sup>이 서명을 개방하기에 이르렀다. 뒤이어 1985년에 남태평양상의 유사한 지역에서 또 다른 비핵지대인

15) Ibid., p. 478.

16)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은 1959년 12월 1일 남위 60도 이남지역을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예를 들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 군사훈련, 무기시험과 같은 군사적 성질의 조치는 금지하지만 평화적 목적의 군 요원과 장비사용은 허용하는 반면 핵폭발이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극내의 목표물을 향해 핵무기 사용이 금지되고 지대내 위치한 장치로부터의 핵무기 발사도 금지된다. 이 조약은 1959년 12월 1일 12개국이 워싱턴에서 서명을 한 이래 2010년 6월 현재 총 48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17) 트라텔롤코 조약(Tlatelolco Treaty, 중남미비핵지대조약)은 1967년 2월 14일 멕시코시의 트라텔롤코에서 서명을 개방하고 1969년 4월 25일 발효되었으며 2007년 6월 현재 중남미 33개국 전부가 비준한 상태이다. 영토·영해·영공 및 여타 법률에 따른 주권행사 지역에서 핵무기의 실험·사용·제조·생산·획득·접수·저장·설치·배비·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사용과 핵장치의 폭발은 허용하고 있다. 이행기구로서 중남미핵무기금지위원회(OPANAL, Agenc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가 있으며,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하고 있다. 2개의 부속 의정서가 있으며 제1의정서는 지대내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4개국의 조약 의무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4개국 모두 비준한 상태이다. 제2의정서는 5대 핵국의 회원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의정서 비준을 완료하였다.



라로통가 조약<sup>18)</sup>이 체결되었으며, 이로부터 10년 후 1995년 12월 동남아 지역에서 방콕조약<sup>19)</sup>이 체결되고 1996년 4월엔 이집트 카이로에서 펠린다바 조약<sup>20)</sup>이 서명되었다. 수년 전인 2006년 9월에 중앙아시아 비핵지

- 
- 18) 라로통가 조약(Ralotonga Treaty,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은 남태평양 지역내 미국·영국·프랑스의 핵실험 실시가 비핵지대 설치 필요성의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하였으며 1983년 호주 제의로 협상이 시작되어 쿡 아일랜드의 수도인 라로통가에서 1985년 8월 6일 서명이 개방되어 1986년 12월 11일 조약이 발효되었고 2010년 6월 현재남태평양 13개국이 모두 비준한 상태이다. 내수·영해·다도해·해저와 하층토·영토·영공에서 핵폭발장치의 실험·제조·보유·통제·획득·배치·부착·장착·수송·비축·저장·설치·배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NPT와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비핵국가에 평화적 목적의 핵분열물질을 제공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의 해상 및 육상에서의 폐기도 금지된다. 이 조약은 3개의 부속의정서가 있으며 제1·2의정서에 규정된 내용은 트라텔토코 부속의정서와 동일하고 제3의정서는 지대내 핵실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대내 영토를 미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제1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5대 핵국은 나머지 의정서에 모두 서명하였다.
- 19) 방콕조약(Bangkok Treaty,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은 동남아시아 평화·자유·중립의 보장을 언급한 1971년의 쿠알라룸푸르 선언에서 유래되었으며, 1995년 12월 15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을 대상으로 태국 방콕에서 서명을 개방한 후 1997년 3월 28일 발효되었으며 2001년 6월 필리핀을 마지막으로 전 회원국이 비준을 완료하였다. 영토·영해·영공·내수·다도해·해저·하층토·대륙붕과 전관경제수역(EEZ)에서 핵무기의 개발·제조·획득·보유·통제·배치·수송·시험 및 사용을 금지하며, 경제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조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동남아시아비핵지대위원회와 검증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있다. 또한 이 지대내에 관할 영토를 갖고 있는 해외국가가 없는 관계로 회원국에 대한 소극적안전보장(NSA)만을 규정한 단 1개의 부속의정서만 존재한다.
- 20) 펠린다바 조약(Pelindaba Treaty,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은 1964년 이집트 카이로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단결기구(OAU)가 아프리카 비핵화를 공식 추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과거 프랑스의 핵실험과 남아공의 핵무기 보유가 비핵지대 설치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남아공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1991년에 NPT에 가입한 후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1996년 4월 11일 카이로에서 조약 서명을 개방하였으며 2009년 7월 15일부로 발효되었다. 발효 당시 총 53개국 중 28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아직 25개국이 미비준 상태에 있다. 조약은 영토·영해·영공·내수·다도해·해저·하층토에서 핵폭발장치의 연구·개발·제조·비축·획득·실험·보유·통제·배치·저장·장착·부착·수송 금지와 핵폐기물의 덤핑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핵시설에 대한 공격금지와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핵물질·시설에 대한 최고수준의 물리적방호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3개 부속의정서가 있으며 제1의정서는 핵국의 회원국에 대한 NSA 규정이며, 제2의정서는 지대내 핵실험 금지 규정이고, 제3의정서는 지대내 영토를 보유한 국가의 조약 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의정서는 스페인과 프랑스만이 해당된다. 현재 제1·2의정서에 미국과 러시아가 서명하길 거부하고 있다. 이행 메커니즘으로 핵에너지에 대한 아프리카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약의 이행과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및 독성물질의 폐기 금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sup>21)</sup>가 지역내 5개국을 대상으로 서명을 개방하였으며, 단일국가 비핵지대로서 1992년 몽골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선언한 몽골비핵지대<sup>22)</sup>가 있다. 이와 함께 중동지역의 비핵화를 위한 중동비핵지대<sup>23)</sup>가 1974년 최초 유엔결의안이 채택된 이래 지금까지 유엔총회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 앞서 언급한 비핵지대들은 유엔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경우엔 직접적인 협상지원과 소요 자원을 제공한바 있다. 유엔총회는 기존의 비핵지대 경우에는 특히 소극적안전보장에 대한 핵국의 기준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중동비핵지대와 같은 새로운 비핵지대 레짐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21) 중앙아시아 비핵지대(Central Asian Nuclear-weapon-free-zone)는 1992년 알마티 선언에서 비핵지대 설립 논의가 시작되어 1997년과 2000년 유엔총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조약이며 세미팔라틴스크 (Semipalatinsk) 조약 혹은 세메이(Semei 또는 Semey) 조약으로도 불린다. 러시아와 중국은 동 조약설립에 찬성인 반면 미국·프랑스·영국은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전보장조약인 '타쉬켄트' 조약의 존재와 지역·국제안보 및 개인·집단방어에 해가 되도록 현존 안보협정체제를 방해하는 어떤 지대 설립도 반대한다 입장과 함께 동 조약이 지대내 핵무기 통과를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대하였다. 미국·프랑스·영국이 조약설립에 대한 방해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6년 9월 8일에 서명이 개방되고 2009년 3월 21일에 조약이 발효되었다.
- 22) 몽골비핵지대(Mongolia's Nuclear-weapon-free-zone)는 과거 냉전시 몽골과 국경을 연하고 있는 중·소간 핵분쟁 가능성이 존재했었으며 몽골 주변에서 전 세계적인 핵실험의 27%가 실시되었고 핵무기와 핵저장소 등 20여개의 중·러 핵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이 1992년 자체적으로 자국의 비핵지대화를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1997년 단일국가 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일반지침과 개략적 요소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였고, 1998년 12월 4일 유엔총회에서 단일국가 비핵지대화를 승인받았으며, 2000년 2월 28일 발효되었다. 2000년에 국내 입법화된 주요내용은 자국 영토내에서 핵무기 제조·저장·수송·실험의 금지와 무기급 핵폐기물의 수송·덤핑·저장을 금지하고 있다. 단 하나의 남은 과제는 단일 비핵지대에 대한 핵국의 공식 인정을 인정받는 것이며, 몽골 정부는 몽골·중국·러시아간의 삼자간 조약 초안을 2007년 9월 양국에 전달하여 2008년초부터 협상 개시를 희망한 바 있다. 이 초안은 미국·영국·프랑스의 비핵지대 보장을 요구하는 부속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 23) 중동비핵지대(Middle East Nuclear-free-zone)는 1974년 이집트와 이란이 최초로 유엔 총회에 중동비핵지대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 후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이 1990년 5월 핵·화학·생물무기 금지를 전부 망라한 중동 비대량살상무기 지대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1995년 5월 NPT 평가회의에서 중동비핵지대 설립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상의 핵국인 이스라엘이 자국의 핵태세, 안보전략 및 대외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중동지역 비핵지대화 논의 진전은 난망하다고 할 수 있다.

### 3.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LNWFZ-NEA) 논의 동향 분석

#### (1) 추진배경

1970년대 초부터 Maeda, Whiting, Cunningham 등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민간분야에서 한반도와 주변 동북아 지역을 제한적으로 비핵지대화하는 LNWFZ-NEA의 설립 필요성, 주요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중 가장 혁신적인 제안으로는 존 엔디콧(John Endicott) 박사의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안과 히로미치 우메바야시(Horomichi Umebayashi)의 제안이 있다. 특히 미국 조지아 공대 산하 국제전략·기술·정책연구소(CISTP : 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y, Technology and Policy)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엔디콧 박사의 경우에는 과거 199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핵강대국이 존재하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역학을 감안하고 미·중·러간 그리고 남북한 간의 미묘한 갈등관계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역내 정치·군사적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협력안보체제 구축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비핵지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일본 비영리 연구기관인 Peace Depot의 우메바야시 소장은 중국·미국·러시아의 지원역할을 포함하여 남북한과 일본을 망라해 적용하는 ‘모델 LNWFZ-NEA’를 발전시켰다.<sup>24)</sup> 이 모델 조약안은 비핵지대 설립에 필요한 핵심 비핵화 규정과 소극적안전보장을 포함하면서 기존의 다른 비핵지대의 내용을 넘어서 회원국들이 핵국에 의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즉 핵우산에 대한 의존도를 포기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다 주목해야 될 사항으로서, 1992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24) Hiromochi Umebayashi,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NEA-NWEZ), April 2004.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일본·핀란드·알제틴·몽골 등 9개국의 민간 전문가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LNWFZ-NEA 논의를 계속 주도하고 있는 엔디콧 박사의 제안은 최초 1991년 미국이 한반도로부터 전술핵무기의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자극을 받았으며, 동시에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이 주변국을 포함한 지역적 합의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 사무국과 사찰 시스템 및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 등 공식적 구조를 갖춘 비핵지대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제안은 남북한·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지대를 대상으로 원형 또는 타원형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세스는 지대내 모든 국가들에 대한 신뢰 구축조치와 함께 지역내 비핵화를 위한 핵국의 선의와 약속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2009년 일본 민주당이 하토야마 내각 출범시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접근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2009년 8월 일본 아사히 신문<sup>25)</sup>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과 한국은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에 먼저 서명하고 이를 발효시킴으로써 주도권을 가져야 하며 만약 미국·중국·러시아가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금지하는 의정서에 비준한다면 非핵우산 문제가 지역 내에서 대두될 것이다.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한 후 非핵우산 하에 자국 보호를 위해 조약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망은 북한이 핵에 대한 야망을 포기케 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옹호하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 설립 논의와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엔디콧 박사가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LNWFZ-NEA 잠정사무국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관련국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LNWFZ-NEA 본회의(Plenary session, Expanded Senior Panel인 확대고위급회의를 의미)는 Track-II(민간차원) 수준에서 각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정책문서를 참고하거나 혹은 정부측 인사들과 크고 작은 교감을 통해 입장을 개진하고

25) Asai Shimbun, "64 Years and Counting", editorial, 20 August 2009.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 조약안 토의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시 그 논의내용이 나름대로 보편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LNWFZ-NEA 확대고위급회의(ESP : Expanded Senior Panel, 본회의) 주요내용 분석

### 1) 1-6차 확대고위급 회의

엔디콧 박사 그룹에 의해 제기된 동북아 지역내 최초의 비핵지대안은 한국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1200km 반경을 갖는 단순한 원형이었으며, 기존에 설립된 비핵지대의 일반적 지침 준수와 함께 지대내 모든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활동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특히 러시아가 오오츠크 해의 핵시설을 유지하고 미국과 중국이 실제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92년 3월 북경에서 개최된 동 개념에 대한 공개발표에서 중국을 제외한 한국·북한·미국·캐나다·홍콩·일본·러시아의 모든 참석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약 60%의 핵무기가 제시된 지대 안에 배치된 관계로 이러한 비핵지대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93년 3월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중국 의회로부터 온 참석자가 뜻밖에도 상기 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추후 알고 보니 당시 북한이 NPT를 곧 탈퇴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중국도 사실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핵 비확산에 대한 새로운 태도 변화를 보여준 것이었다.<sup>26)</sup>

엔디콧 박사는 이후 각국을 순회하며 해당국 외교·국방 관계자와 수차에 걸친 토의를 하게 되며 이어서 1995년 1월 애틀랜타에 한·미·일·중·러·몽골 등 5개국 대표가 모여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a limited nuclear-

26) John E. Endicott, "Limited nuclear-weapon-free zones: the time has com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0, No. 1, March 2008, pp. 14~15.

weapon-free zone in northeast Asia)라고 불리는 조약 초안을 완성하였다.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는 실제로 해당 지대 내에서 핵국의 모든 핵무기 완전금지는 비현실적인 제안인 까닭에 '전술 핵무기'만 제거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적 책임과 사찰업무를 관장할 지역기구 설립에도 합의하였다. 1995년 2월 애틀랜타 회의에서는 비핵지대 모습이 원래의 원형 형태에서 타이완으로부터 알래스카 쪽으로 향하는 타원형으로 바뀐 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지대내 중국 영토를 줄이는 대신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영토의 포함은 최초의 원형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1995년 애틀랜타 회의에서 '합의된 원칙(The Agreed Principles)'이 채택된 후 참석국가 수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1996년 3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최초로 확대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직 고위 외교관, 퇴역 장성, 학자, 핵전문가, 사업가들이 포함된 제1차 확대고위급회의(ESP : Expanded Senior Panel,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어서 제2차 고위급 회의가 동년 10월에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서 미래를 위한 행동의제가 포함된 보르도(Bordeaux) 의정서가 채택되고 잠정사무국(interim secretariat)이 설립되었다. 1997년 10월 모스크바의 제3차 본회의에서는 모스크바 각서(Moscow Memorandum)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1997~1998 기간 동안에 ESP가 성취해야 할 다음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sup>27)</sup>

첫째는 ESP 실무그룹이 발전시켜야 될 문제로서 주요내용은 1단계에서 한국·일본·몽골·북한 등 동북아 비핵국가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비핵지대 창설, 시차별로 핵무기 보유지역에서 일개 혹은 수개기지로부터 핵무기를 제거 및 폐기하거나 재배치하는 시험 프로젝트 추진, 2단계에서는 핵국들을 위한 핵무기의 특정 무기 종류와 그룹 혹은 범주의 지정, 지대내 핵무기 사찰시스템 도입, IAEA와 연계된 검증시스템 구축 및 유엔기관과 접촉, 인적자원의 능력과 기금지원 수준 및 선호되는 지역본부의 위치 등을

27) The Moscow Memorandum of the Expanded Senior Panel of the Northeast Asia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Moscow, Russia, October 1997.

포함한 기구 구조문제, 관련국가의 이해와 국제조약 하에서의 각국의 법적 의무에 관해서 LNWFZ-NEA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는 작업 등이 있다.

둘째는 회기간 접촉을 촉진 및 제도화하기 위해서 Track-II 사무국의 활용을 증대시켜 각종 이슈에 대해 각국 대표단간에 협조와 전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LNWFZ-NEA 개념의 국제적 인식제고와 동북아내 지역적 협력안보 증진을 위해 Track-II 차원의 잠정사무국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연중 최소 1회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적 역내안보 시스템을 위해 적절한 신뢰구축조치(CBMs)를 포함한 이슈 영역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핵무기의 조급한 발사를 방지하는 방법, 작전적 운용목적 이외의 핵탄두에 대한 안전 보증 기술, 전구미사일방어체제의 영향, 투명성 조치와 대량살상무기 선제불사용 서약 및 재래식무기 신뢰구축조치 등의 증진, 유라툼(EurAtom)과 같은 맥락에서 지역적 핵안전조치 기구인 아시아툼(AsiaAtom)의 창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98년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과거 유럽에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역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에 신뢰구축조치를 강화하여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 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탄생시킨 전례를 거울삼아, '바스켓' 구조(Basket Structure)가 최초 도입된 회의로서 이 회의 이후부터 개최된 고위급 회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바스켓 분류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서 바스켓1은 LNWFZ의 특성에 대한 토의에 초점을 두었으며, 바스켓2는 동북아 지역내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CBMs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탐색하는 것이고, 바스켓3는 역내 국가들이 완전히 통합된 지역의 일부로서 기능하도록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28)</sup>

1999년도에는 두 가지 회의가 열렸으며 하나는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기술회의(Technical Meeting)이며, 다른 하나는 10월 일본 하코네

28) John E. Endicott, March 2008, Ibid., p. 18.

에서 열린 제5차 본회의로서 양개회의 공히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바스켓 즉 LNWFZ-NEA, 지역적 CBM 및 경제적 인센티브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에 들어서도 7월에 기술회의가 열렸고 9월에 북경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 북한 대표가 1992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하였다.

## 2) 7차-12차 확대고위급 회의

2001년은 한국 정부로서는 매우 뜻깊은 해라 할 수 있겠다. 모든 ESP 국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본회의가 개최되어 만장일치로 LNWFZ-NEA 조약 초안(일명 서울 조약)을 채택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동북아 제한적비핵시대 회의체를 각국 정부 관료가 공식 참석하는 Track-I 차원으로 격상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2002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8차 본회의에서는 전년도에 채택한 서울조약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동북아 지역안보구조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회의 종료시 울란바토르 의정서(Ulaanbaatar Protocol)를 채택하였다.<sup>29)</sup> 동 의정서는 본회의가 바스켓 I과 관련하여 서울 조약 초안 검토를, 바스켓 II 및 III에서는 동북아 지역내 재래식무기 군비통제방안과 지역안정 보장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 문제를 각각 다루었음을 언급한 후에 신뢰구축조치가 바스켓 II의 핵심이 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의정서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권장사항을 살펴보면, 군사교환 프로그램 및 다자간 군사훈련 기회의 증대와 첨단 무기류 확산 방지 및 노후화된 무기의 폐기 촉구, 역내 우발상황 대응그룹 창설, 한반도 재래식 및 대량살상무기관련 군비통제 이슈를 남북 양자간 혹은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하에 해결, 남북한간 평화 정착을 위해 현존 합의서의 이행 필요성, 역내 강대국의 제도적인 지원역할에 대한 의무, 북한의 불참 상태 하에서 북한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모색, 역내

29) Ulaanbaatar Protocol, The 8th Plenary of the LNWFZ-NEA, Ulaanbaatar, Mongolia, 27 July 2002.



새로운 정치현실을 이해하고 군사훈련의 점진적 감소 필요성, 동북아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투명성 증대 노력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럽 군비 통제 경험의 동북아 적용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 2004년 6월에 제9차 본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문서로 제주의정서(Jeju Protocol)가 채택되었으며,<sup>30)</sup> 동 의정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회의의 토의 중점으로 미래 LNWFZ-NEA의 방향 모색과 당시 진행 중이던 6자회담의 전망을 평가하고 동 회의가 어떻게 6자회담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6자회담에 몽골을 추가로 포함하여 7자회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의정서는 LNWFZ-NEA 프로세스와 6자회담간의 공통된 영역으로서 다자간 접근책과 다자대화들의 틀, 한반도가 비핵지대화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합의, 최종 합의서의 궁극적 이행을 보장할 사찰체제와 북핵문제가 해결된 후에 지역안보 포럼의 제도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06년 3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0차 본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동북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 : Confidence & Security Building Measures)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관련국간 평등한 관계 정상화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또한 민간차원(Track-II)의 비공식적 대화체를 정부차원(Track-I)의 공식협의체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sup>31)</sup> 여기에 참석한 북한측 대표는 당시 북한 정부 입장에 따라 6자회담의 종결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화와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김정일-노무현 전 대통령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 그 와중에 일본 동경에서 제11차 본 회의가 열려 지역내 협력안보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폐막

30) Jeju Protocol, The 9th Plenary of the LNWFZ-NEA, Jeju Island, 19 June 2004.

31) Press Release, The 10th Plenary Meeting of the LNWFZ-NEA, Shanghai, 22 March 2006.

시 도쿄의정서(Toky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도쿄의정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자·다자차원에서 역내 국가들 간에 신뢰안보구축조치가 필수적이며, LNWFZ-NEA 프로세스 그 자체가 한반도를 넘어 역내 군비통제 목적 달성을 위한 신뢰구축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32)</sup> 아울러 의정서가 LNWFZ-NEA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남북간의 대화·교류 지원, 9·19 공동선언의 2단계 행동조치인 북한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등의 이행, 국제군비통제 레짐의 강화와 비국가행위자(NSA : Non-state actor)의 역할을 고려한 전통적 억제개념의 확대, 역내 점진적인 핵군축의 원칙을 확인, 6자회담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와 북한 비핵화 진전과의 균형 유지, 공적·사적인 대북한 벤처 투자사업의 발굴, 여타 국가들에 의한 몽골 단일국가 비핵지대화 개념 지원,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북한 핵프로그램 및 시설의 완전 폐기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0월엔 2001년의 서울과 2004년의 제주에 이어 한국에서 3번째인 제12차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LNWFZ-NEA 추진에 대해 Track-II 차원에서 한국의 주도적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특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및 한국철도공사 등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바스켓 II와 바스켓 III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고 회의 종료시 2008 대전 선언문(Daejeo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본 회의중 논의된 사항으로서는 LNWFZ-NEA의 국제 제도화 문제와 적절한 검증보장을 위한 사찰기술, 신뢰안보구축조치 증진 방안, 대북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이 있으며 지역협력 차원에서 철도의 역할과 북한지역의 산림화 문제, 북한 경제상황과 개성공단의 경제기여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대전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sup>33)</sup>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32) 2007 Tokyo Protocol, 11th Full Plenary Session of the Expanded Senior Panel of the LNWFZ-NEA, 6 October 2007.

33) 2008 Daejeon Declaration, Interim Secretariat,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LNWFZ-NEA), 12th Full Plenary Session of the Expanded Senior Panel, Daejeon, Republic of Korea, 8 October 2008.

만큼 북한 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 도쿄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넘어선 다양한 의제들이 개발되었는데, LNWFZ-NEA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북핵 프로그램과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필요성,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완전한 검증기술의 적용, 현 남북간 군사합의의 이행 필요성, 본 회의를 Track-II 수준에서 Track-I으로 전환,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역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뢰안보구축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횡단철도(Trans Asia Railroad) 건설, 북한의 철도 복구,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복구, 한반도 북쪽 중단철도 건설을 위한 남북공동의 군사·기술·정치전문가 패널 구성,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해 통행절차 관련 남북한간 합의, 남북철도협력기구 설립을 통해 동북아 철도발전의 다자협력 촉진 등을 들 수 있겠다.

(3) 동북아제한적비핵지대(LNWFZ-NEA) 조약 초안<sup>34)</sup>  
(일명 서울 조약, The Seoul Treaty) 주요내용

향후 LNWFZ-NEA 조약이 지역내 회원국간 체결될 경우 초안 형태인 2001년의 서울조약을 기초로 조약안이 성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관계로 조약 전문과 본문을 아래에 적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의, 적용지대, 적용받는 핵무기 시스템 및 조약기구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보다 구체적 형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문)

핵무기 출현이래 세계는 핵무기 사용의 궁극적 금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역별 혹은 개별적으로 비핵지대를 설립하였으나 여기에 핵국이 포함된 적은 없다. 동북아 국가들은 비핵지대

34) Draft Treaty for a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The Seoul Treaty), The Seoul Declaration, The 7th Plenary Meeting of the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Seoul, October 2001.

개념을 통해 핵안보를 보장받길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역내 3대 핵국의 비핵지대 동참이 요구된다. 한·미·일·중·러·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알제틴·캐나다·핀란드·프랑스 등 4개 지원국의 비정부 대표자들이 9년간의 노력을 거쳐 동북아 지역내 제한적비핵지대 초안을 작성하였다.

(본 문)

제1조 (조약의 목적) 핵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회원국의 안전과 안보를 제공

제2조 (회원국) 핵국(미국·중국·러시아), 비핵국(한국·일본·북한·몽골)

제3조 (정의)

- 제한적 :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제한과 핵무기가 배제되는 지역을 제한
- 영 토 : 비핵국의 경우 법률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영공 및 모든 공간을 포함한 전체 관할구역이며, 핵국의 경우 나중에 지정되거나 혹은 핵국이 동의한 지역을 의미

제4조 (적용지대) 비핵국의 지·해·공 및 기타 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핵국의 지정된 영토

제5조 (적용받는 핵무기 시스템)

- 회원국은 조약이 전술 및 전략핵무기와 동 핵무기의 운용에 필요한 지원시설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 회원국은 어떤 핵무기와 관련 지원시설이 조약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검토 및 규정
- 핵국은 자국의 안보적 관점에서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를 규정
- 회원국은 조약에 구속될 핵무기 비율을 설정

제6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약속)

- 회원국은 조약 적용지대내 위치한 모든 원자력 시설의 확인에 동의
  - 회원국은 원자력시설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
- 토록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규정을 이행
- 회원국은 지대 내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개발에 상호 협력

제7조 (통제 시스템)

- 회원국은 조약 의무 이행에 대한 최첨단 검증시스템 설립에 동의
- 회원국은 검증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공유

제8조 (기구 창설)

- 회원국은 조약 목적 지원에 필요한 기구 창설에 동의
- 기구의 본부는 회원국이 동의하는 지역내의 장소에 위치함
- 회원국은 영구적인 기구 운영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
- 기구의 목적은 지대내 핵무기의 궁극적 제거 목표를 가진 LNWFZ-NEA의 창설을 위한 정기적 포럼을 제공하며 기구가 인정받도록 여타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

• 기구는 운용 초기단계에서 다음사항을 검토 - (i) 조약 적용지대의 크기와 모양, (ii) 지대내 포함될 핵무기 종류, (iii) 시간단계별 제거를 위해 지정된 핵무기의 종류, (iv) 조약 의무의 이행에 대한 검증체제의 성격과 범위

제9조 (조약 유효기간) 조약 유효기간은 무기한

제10조 - 15조 조약탈퇴, 분쟁의 중재, 조약 개정 및 발효문제 등을 포함

## 4. LNWFZ-NEA 추진이 갖는 대내외 안보적 함의

### (1) 국제 및 지역 안보적 함의

#### 1) 핵보유국이 포함된 최초의 비핵지대 레짐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과 1969년 발효된 트라텔톨코 조약 등으로부터 지난 2010년 5월의 NPT 평가회의<sup>35)</sup>나 2010년도 유엔총회 결의안<sup>36)</sup>에서

35) Draft Final Document, 2010 Review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CONF.2010/L.2, 27 May 2010.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중동비핵지대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핵지대는 핵보유국이 참여하지 않은 비핵국가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핵보유국인 미국·중국·러시아 3개국의 일부 영토가 포함된 LNWFZ-NEA는 비핵국으로만 구성된 기존의 비핵지대가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핵보유국들은 냉전시 뿐만 아니라 탈냉전시대에도 자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에 크게 의존해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부 핵국들이 여타 비핵국으로만 체결된 비핵지대 조약에 자국 항공기나 함정의 기착·기항과 통과·통항에 대한 제한 가능성 및 여타 안보적 우려를 이유로 비준을 유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시 핵국이 포함된 비핵지대의 설립은 국제사회, 특히 북반구내 추가적인 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역내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010년 5월 27일 채택된 NPT 평가회의 최종문서상 언급된 비핵지대 당사국들은 모두 비핵국가들로 구성된 상태이며, 동 문서의 제98-107항은 지역별 비핵지대 설치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핵비확산체제를 강화시키며 핵군축 목표실현에 기여함을 강조하면서 비핵지대내 핵무기 부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특정 비핵지대조약에 비준하지 않은 핵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과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에 비준을 목표로 프로세스를 개시할 의향이 있음을 발표하였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비핵지대 국가들과도 비핵지대조약의 서명·비준을 위해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평가회의 문서는 핵국이 비핵지대 국가들에게 소극적안전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비핵지대 국가들이 2005년 4월과 2010년 4월에 멕시코 시티와 뉴욕에서 각각 '핵무기없는 세계'의 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36) UNGA/Res/64/26,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in the region of the Middle East, 14 January 2010, UNGA/Res/64/57, Towards a nuclear-weapon-free world: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of nuclear disarmament commitments, 12 January 2010, UNGA/Res/64/66,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Middle East, 14 January 2010. 앞의 3가지 2010년도 UN 결의안 모두 중동지역의 신뢰구축조치로 간주되는 중동비핵지대 설치의 중요성을 UN 회원국들에게 강조 내지 촉구하고 있다. 특히 Res/64/26은 상호 검증가능한 비핵지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Res/64/66은 이스라엘의 NPT 가입을 촉구하면서 중동지역내 보편적인 조약준수의 실현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핵시설을 IAEA의 전면안전조치 하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NPT 제9조 3항에 의거 미국·러시아 등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 2) '제한적 비핵지대' 개념의 등장

'제한적'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전술한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 조약 초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제한과 핵무기가 배제되는 지역을 제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동북아에서 주요 정치행위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포함으로 인해 기존의 비핵지대 조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소한 접두어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한적'이라는 표현은 지구상 향후 어떤 비핵지대가 추가로 설립된다 할지라도 재차 사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상 3대 핵국의 긴밀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북한의 핵보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한국과 대만의 주변여건에 따른 안보적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역내 핵확산 가능성을 잠재우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대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이 지역의 정치·안보현실이 지구상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략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핵국의 이익과 역내 비핵국의 안보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편으로 불가피하게 '제한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약 초안에는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10여년 간의 토의를 통해 핵무기 시스템 관련 전략핵무기를 제외한 전술핵무기만 제한적 비핵지대 경계선 밖으로 이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다.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사거리 특성상 지대 밖 이전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 3) 핵확산금지조약(NPT),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핵비확산체제 강화에 기여

NPT 체제는 1998년의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현재 이란의 핵 개발 의혹<sup>37)</sup> 및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비핵국에 의한 수평적 핵확산 추진으로 인

3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 2010.8.20. 이란 핵개발 의혹은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부세르의 경수로발전소가 핵개발용인지 민간용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2002년 8월 이란 망명자 단체가 이란의 원전 건설을 폭로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IAEA의 사찰과 영국·독일·프랑스의 중재노력 및 UN안보리에 의한 결의안 채택

해 국제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CTBT는 1996년 9월에 서명이 개방된 후 14년이 지난 2010년 9월 현재까지 아직 발효되지 않는 상태에서 CTBT 발효추진회의<sup>38)</sup>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의 보편성 달성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 LNWFZ-NEA 조약이 추진될 경우 핵국이 자국의 일부 영토로부터 핵무기를 철수시켜 비핵지대화를 달성한다는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소위 핵비확산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전술핵무기에 대한 핵군축을 단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아울러 비핵지대 조약은 일반적으로 지대내에서 핵무기 생산·보유·사용금지와 함께 핵실험금지도 포함된 만큼 동북아 일부지역에서 미·중·러 3대 핵국의 핵실험 포기 의무의행은 국제적으로 핵확산 잠재국들에게 영향을 미쳐 NPT와 CTBT 체제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 4) 여타지역의 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유엔결의안의 실효성 및 추진동력 제공

매년 개최되는 유엔총회시 비핵지대 관련 많은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으며,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도 중동비핵지대결의안<sup>39)</sup> 등 다수의 비핵

---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UN안보리는 이란 핵시설이 군사용이라는 판단하에 2010년 6월 제4차 대이란 제재결의안을 가결하고 7월엔 미국 의회가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통과시킨 상태하에서 2010년 9월 현재 EU 27개국과 호주·캐나다·일본 등 30여개국이 이란 핵관련 단체·기업·개인의 자산동결과 금융거래 제한 등 독자적인 이란제재안을 내놓고 있다.

38) 동 회의는 1996년 CTBT의 서명 개방후 3년이 지나도 발효되지 않을 경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1999년 제1차 발효추진회의가 개최된 이래 2009년 9월엔 제6차 발효추진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된 바 있다. CTBT는 2010년 4월 현재 182개국이 서명, 150개국이 비준하였으며 CTBT의 발효요건은 원자력 발전능력을 보유한 44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나 미국·중국·이스라엘·이란은 서명을 한 상태에서 비준을 미루고 있으며 인도·파키스탄·북한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 이어 2010년 4월 NPT 발효 40주년 성명에서도 'CTBT 비준을 모색하고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단언하였으나 아직 미 상원비준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수반되지 않아 비준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2010 핵군축보고서] 핵군축관련 국제협약 & 비핵지대화, 평화군축센터, 2010. 5. 3 참고.

39) UNGA/Res/64/26, Ibid.



지대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는 비핵국가들 사이에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장치가 바로 지역별 비핵지대조약의 설립이라는 국제적 인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적대국 혹은 인접국의 잠재적 핵사용 위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서 비핵지대의 역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대 핵국이 LNWFZ-NEA 창설에 합의시 여타 지역국가들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합의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매년 등장하는 일부 비핵지대결의안이나 또는 핵보유국이 서명 및 비준을 유보하는 결의안<sup>40)</sup> 등과 향후 등장하게 될 일부 지역 혹은 단일국가로 구성된 비핵지대결의안 등에서 과거 핵국이 비핵지대결의안에 보여준 관심과는 판이하게 다른 긍정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증대되어 그 실효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 5) 동북아 긴장완화 및 역내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기여

최근의 국제안보 추세를 감안시 자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각국은 동맹관계의 강화뿐만 아니라 협력안보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지역별 다양한 안보협의체<sup>41)</sup>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시에 핵 및 화생무기와 재래식무기 관련 각종 군축협상을 자국에 대한 안보위험 감소의 장으로 활용하고 역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LNWFZ-NEA는 동북아지역 신뢰구축조치의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헬싱키에서 열린 확대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바스켓 구조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LNWFZ-NEA는 비핵지대 자체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아시아횡단철도, 교육에 대한 교류와 역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긴장완화와 역내 국가간 군

40) UNGA/Res/62/31, Treaty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Bangkok treaty), 10 January 2008, UNGA/res/62/15, African Nuclear-weapon-Free Zone Treaty, 10 January 2008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1)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경우 아세안지역포럼(ARF), 동북아협력대화(NEACD),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이 있으며, 유럽의 경우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사적 반응시간 증대를 위한 재래식 군비통제의 새로운 개념 정립 등 지역을 하나로 결속하도록 돕는 신뢰구축조치도 강조하고 있다.<sup>42)</sup>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동북아 지역내 신냉전 기류가 단기간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는 가운데 LNFWZ-NEA의 추진은 양국간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양자·다자간 신뢰안보구축조치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 (2) 국내 안보적 함의

### 1) 북한 핵문제

이란 핵프로그램과 함께 국제적 주시의 대상인 북핵문제는 잘 알려진 대로 2005년의 9.19 공동성명 이후 2.13합의와 10.3합의를 통해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등 해결책을 모색해 왔으나, 오히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 이전의 원점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최근 북한은 핵억제력<sup>43)</sup>을 앞세워 선군정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LNWFZ-NEA 추진은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안보우산을 제공하는 최대 버팀목인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일부 안보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지역내 전술핵무기를 포기할 정도로 중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만큼, 본 조약의 적극 추진시 북한도 언제까지나 방관내지 무시할 수는 없으며 대외적으로 강한 정치안보적 압박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본회의 주요부분인 바스켓 III의 적극적이고 기술적인 추진 등을 통해 북한의 참여가 확보된다면 국내적으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이슈인 북한 핵을 넘어서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본다.

42) John E. Endicott, March 2008, Ibid., p. 24.

43) 외무성 대변인 회견, 2010. 6. 28 조선중앙통신.

2)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사문화내지 폐기와 핵투명성 보장하 상업용 핵 연료주기 확보 기회로 활용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제1항·시험·제조·생산·저장·사용의 금지, 제2항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제3항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 금지, 제4항 비핵화 검증 위한 남북상호사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NWFZ-NEA의 경우 적용범위가 한반도 전역의 비핵지대화를 보장하므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제1항을 충족시킴은 물론 IAEA 안전조치 하에 핵의 평화적 이용 검증을 위해 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군사적 핵관련 활동과 시설 및 장비·물자도 핵사찰을 피해갈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 한국은 2010년 6월 현재 20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sup>44)</sup>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자체적인 우라늄 저농축 능력의 확보가 현 시점에서 시급한 실정이다. LNWFZ-NEA의 추진은 한반도내 핵의 군사적 전용이 완전히 금지된 것을 보장하는 만큼 남북 양자간에 합의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핵분열물질 생산금지를 위해 삽입한 제3항의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보유금지 조항 역시 별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핵의 평화적 이용과 우리의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에 대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자동적으로 사문화내지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우리 원자력 산업의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핵연료 확보를 위한 연료주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치적·기술적으로 설득력있는 대외적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3) 국민적 안보 자신감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상태이며 주변국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일본의 핵무장론을 부추기

44) 이 외에도 신고리 원전 4기, 신월성 원전 2기, 신울진 원전 2기 등 포함 8기가 추가로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국내원전현황」, 한국원자력산업협회, <http://www.kaif.or.kr/pds/09.asp>, (검색일: 2010.8.28)

곤 했다.<sup>45)</sup> LNWFZ-NEA 설립은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출혈을 강요당하고 남남갈등 속에 소모적 정치논쟁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했던 작금의 현실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정책적으로나 국민의 통일된 안보의식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걸핏하면 돌출적인 핵무장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부차원의 대응에 고민을 해 왔던 점을 감안시 LNWFZ-NEA 창설 추진은 미래 우리의 잠재적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주변국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는 가치있는 대안으로 간주된다. 동 조약은 또한 비핵지대 적용범위를 감안시 중국-대만 양안간에도 영향을 미쳐 핵개발 혹은 핵사용 위협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전략적 측면에서 북한, 일본, 대만 및 중국의 핵확산과 충돌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역내 안보역하를 감안시 비핵지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 핵위협이 사라진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보자신감을 가일층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 5. 맺 음 말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갈등의 심화와 함께 그러한 갈등의 해결수단으로서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가 갖는 유혹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상호 핵군축을 위한 협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sup>46)</sup> 특히 러시아의 핵무기 관리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과 미국 오

45) 1967년 12월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일본은 핵을 제조·반입·보유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공식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내에서 핵무장론이 끊이지 않았으며 예로서 2006년 10월 20일 아소 다로 외상과 나가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의 '일본의 핵보유 검토 논의의 필요성' 주장을 들 수 있다. <http://www.donga.com/pdf/donga/200610/20/2006102045A35350103.pdf>, (검색일: 2010.8.28)

46)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2002년 5월 24일 모스크바조약으로 알려진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 (SORT :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에 서명하여 작전적으로 배치된 핵탄두를

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계' 구현의지는 양자간에 절대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미국과 러시아간 상호 핵감축노력은 국제사회에 핵무기 공포를 완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잠재적 핵확산국가들과 비국가행위자들의 핵군비통제체제 위반행위는 지구상 곳곳에서 핵위협으로부터 개별국가의 안전보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핵확산 가능성면에서 중동 등 여타 지역에 못지않게 국제적 핵확산의 한축인 북한과 선진 원자력산업을 보유한 한국과 일본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간 안보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 대만 자체적인 핵무장에 대한 유혹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래 역내 핵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하 일부 학자는 동아시아 지역내 비핵지대 창설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일본의 비핵 3원칙, 지역내 선진화된 에너지 산업, 대만의 지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7)</sup>

LNWFZ-NEA의 경우 만일 동 비핵지대의 목표가 세계적인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핵무기 존재를 허용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변경된 형태의 비핵지대가 핵국이 포함된 지역국가간 신뢰구축조치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초기단계의 협력안보체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견해도 대두되었다.<sup>48)</sup> 실제로 근 20년에 걸친 LNWFZ-NEA의 개념 토의를 통해 얻어진 경험은 과거 국제연맹이 국제연합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고 19세기말 미국 북부 13개주가 제정한 헌법인 연맹규약이 미 헌법으로 가는 길을 제공했듯이 NPT 체제가 21세기가 요구하는 필요조건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를 주었다. 1968년

2012년 12월 31일까지 1700-2200기로 감축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어서 2010년 4월 8일 양국 간에 전략무기감축조약(STRAT-1)의 후속협정(New Start Treaty)을 체결하였다. 후속협정은 모스크바조약 상한선보다도 약 30% 낮은 1,550기의 핵탄두 배치, 800기의 핵무기 운반수단, 70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및 핵무장을 위한 중폭격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47) J. Prawitz, *Ibid.*, pp. 459-462.

48) John E. Endicott, March 2008, *Ibid.*, p. 22.

에 합의된 NPT 체제는 40여년이 지난 지금 변화된 국제안보적 대응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한 감이 있으며 많은 허점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량국가나 잠재적 확산국가들과 국가적 실체가 없는 비국가행위자들이 NPT 체제를 이용하여 핵의 군사적 전용을 시도하거나 핵수출통제체제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비확산체제를 원천적으로 강화내지는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완전하고 광범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지역별로 비핵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핵보유국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인 북한과 아울러 핵무장을 위한 기술적·물질적 충분한 잠재능력을 갖춘 주변국 일본을 포함한 제핵적 비핵지대 창설이야말로 역내 평화·안정 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며 미래 핵투명성의 보장 위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 달성에 필요한 평화적 핵연료주기 능력의 구비를 위해서도 매우 긴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먼저 LNWFZ-NEA의 국제적 당위성 확보를 위한 유엔결의안 성안 등 제도적 노력에 집중하면서, 둘째로 동북아 안보 증진을 위해 비핵지대 조약의 세부조항 완성과 함께 지역을 통합하는 기제인 지역신뢰구축 조치 예를 들어 아시아횡단철도망 건설, 역내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역내국가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반응시간 증대를 위한 신개념의 군비통제 등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북한이 동북아 경제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맞춤형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10. 9. 30, 심사수정일 : 2010. 10. 15, 게재확정일 : 2010. 10. 29)

주제어 : 동북아 제핵적비핵지대, 핵보유국, 비핵국, 확대고위급회의(본회의), 소극적안전보장, 신뢰(안보)구축조치, 바스켓, 서울조약, 핵안보 정상회의,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ABSTRACT>

Creation of the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LNWFZ-NEA) &  
the Republic of Korea(ROK)'s Response

Lim, Chae-hong

The things such as New START Treaty, the 1st Nuclear Security Summit, NPT Review Conference, Sanction resolution by the UNSC against Iran, etc. Indicat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covers its determined position as for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long with grave concern about nuclear proliferation. There are several way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volving nuclear weapons free zone (NWFZ). At present we see seven NWFZs in operation worldwide and the plenary meeting for LNWFZ-NEA consisting of civil experts from 9 nations including US, China and Russia is on the course of discussion under a leading role of Dr. Endicott since 1992.

The 1998 plenary meeting in Helsinki introducing 'Basket Structure', the 2001 Seoul meeting terminated draft treaty for the LNWFZ-NEA that is still under in-depth deliberation. The LNWFZ-NEA has international & regional implication encompassing the 1st NWFZ regime with nuclear-have states, the 1st inclusion of the concept *limited*, and contribution to easing regional tension, building up CBMs and strengthening nuclear arms control regimes like NPT or CTBT, etc. To lift feasibility for setting up the treaty, the ROK should pursue such strategy as conversion of Track-II meeting to Track-I, lessening our security fears & impact on the US nuclear umbrella, resolving NK's nuclear issue &

enhancing South-North CBMs, and reinforcing regional cooperation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so forth.

Key Words : 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for Northeast Asia (LNWFZ-NEA), Nuclear Weapon State, Non-Nuclear Weapon State, Expanded Senior Panel (Plenary Meeting), 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 Confidence (& Security) Building Measure, Basket, Seoul Treaty, Nuclear Security Summit, NPT Review Conference